

국회에서 의결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이 명 박 인

2011년 7월 18일

국무총리 김 황 식

국무위원 이 귀 남
법무부장관

●법률 제10861호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법원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의2(법관인사위원회) ① 법관의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법관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인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2. 제41조제3항에 따른 판사의 임명에 관한 사항
- 3. 제45조의2에 따른 판사의 연임에 관한 사항
- 4. 제47조에 따른 판사의 퇴직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대법원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③ 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법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1. 법관 3명
- 2.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검사 2명. 다만, 제2항제2호의 판사의 신규 임명에 관한 심의에만 참여한다.
- 3.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2명
- 4.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하는 법학교수 2명
- 5.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의 자격이 없는 사람 2명. 이 경우 1명 이상은 여성이어야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⑥ 그 밖에 인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41조제3항 중 “大法官會議의 同意를 얻어”를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받

아”로 한다.

제4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2(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① 대법원장이 제청할 대법관 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대법원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추천위원회는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할 때마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법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선임대법관

2. 법원행정처장

3. 법무부장관

4. 대한변호사협회장

5.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6.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7. 대법관이 아닌 법관 1명

8.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3명. 이 경우 1명 이상은 여성이어야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⑤ 추천위원회는 대법원장의 요청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추천위원회는 제청할 대법관(제청할 대법관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대법관을 말한다)의 3배수 이상을 대법관 후보자로 추천하여야 한다.

⑦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하는 경우에는 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한다.

⑧ 추천위원회가 제6항에 따라 대법관 후보자를 추천하면 해당 추천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⑨ 그 밖에 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5年이상 다음各號의職에 있던 40歲이상의者중에서”를 “20年 이상 다음 각 호의 직에 있던 45세 이상의 사람 중에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國·工營企業體, 政府投資機關 기타”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판사는 10년 이상 제1항 각 호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제44조제2항 중 “10年이상”을 “15년 이상”으로 한다.

제44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4조의2(근무성적 등의 평정) ① 대법원장은 판사에 대한 근무성적과 자질을 평정하기 위하여 공정한 평정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평정기준에는 근무성적평정인 경우에는 사건 처리율과 처리기간, 상소율, 파기율 및 파기사유 등이, 자질평정인 경우에는 성실성, 청렴성 및 친절성 등이 각각 포함되어야 한다.

③ 대법원장은 제1항의 평정기준에 따라 판사에 대한 평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연임, 보직 및 전보 등의 인사관리에 반영한다.

④ 그 밖에 근무성적과 자질의 평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45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정년은 각각 70세, 판사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제45조의2제1항 중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를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받아”로 한다.

제47조 중 “判事인 경우에는 大法院長이”를 “판사인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법원장이”로 한다.

제5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3조의2(재판연구원) ① 각급 법원에 재판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② 재판연구원은 소속 법원장의 명을 받아 사건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한 조사·연구, 그 밖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③ 재판연구원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용한다.

④ 재판연구원은 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⑤ 재판연구원은 총 3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채용한다.

⑥ 재판연구원의 정원, 직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2조제1항·제2항, 제44조제2항 및 제4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판사 임용을 위한 재직연수에 관한 경과조치) 제4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3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판사를 임용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판사를 임용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판사를

임용하는 경우에는 7년 이상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임용할 수 있다.

제3조(재판연구원의 채용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제53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채용하는 재판연구원은 총 2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채용한다.

제4조(재판연구원의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제53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까지 재판연구원의 정원은 200명의 범위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이유

법원이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사법제도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청에 부응하여 사법부의 인사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법관의 임용자격을 강화하고 법관의 정년을 연장하여 충분한 사회적 경험과 연륜을 갖춘 법관이 재판할 수 있도록 하고, 법관의 재판 업무를 도울 수 있는 재판연구원제도를 도입하여 법원의 재판 역량을 강화하며, 대법관추천위원회제도를 마련하고, 법관인사위원회를 심의기관으로 하며, 판사에 대한 평정 제도를 개선하여 법관 인사의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관인사위원회 제도 개선(안 제25조의2, 제41조제3항, 제45조의2제1항, 제47조).

법관인사위원회를 심의기관으로 하여 판사의 임명, 연임, 퇴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

나. 대법관추천위원회 제도 도입(안 제41조의2)

대법관추천위원회에서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후보자를 추천하고 대법원장은 추천 내용을 존중하도록 함.

다. 법관 임용자격 강화(안 제42조, 부칙 제2조)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20년 이상 판사·검사·변호사 등의 직에 있던 45세 이상의 사람 중에서 임용하고, 사법연수원장, 각급 법원장 및 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은 15년 이상 같은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보하며, 판사는 10년 이상 변호사 등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임용하도록 하되, 판사 임용을 위한 재직연수에 관하여 경과규정을 마련함.

라. 판사 평정 제도 개선(안 제44조의2)

대법원장은 판사에 대한 근무성적과 자질을 평정하기 위하여 공정한 평정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평정 기준을 정하며, 평정 결과를 인사관리에 반영하도록 함

마. 대법관과 판사의 정년 연장(안 제45조제4항)

대법관의 정년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연장하고, 판사의 정년을 현행 63세에서 65세로 연장함.

바. 재판연구원 제도 도입(안 제53조의2, 부칙 제3조 및 제4조)

재판연구원 제도를 2012년부터 도입하되, 2017년까지는 2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채용하고 이후에는 3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채용하며, 2022년까지 정원은 200명의 범위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